



재정경제부

보도참고자료

- 풍요로운 나라
함께하는 선진경제
- 고품질 정책으로
신뢰받는 재경부

보도일시 2007.9.13(목) 16:00부터

생 산 일	2007년 9월 13일(목)	생산부서	금융정책국 중소기업금융과
담당과장	중소서민금융과장 우상현 (T:2150-9650)	담당자	이상규 사무관 (T:2150-9652)

제목: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관회의 통과

- 상호저축은행 영업활성화 및 건전경영 유도를 위한 「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」이 2007. 9. 13(목) 차관회의를 통과하였음

※ 06.10.19~11.8 입법예고, 07.4.26 규제심사, 07.6.8~9.11 법제처 심사

① 영업구역 근거 마련(§4)

-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영업구역*의 법적 근거를 마련

- 행정구역, 경제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에서 영업구역을 정하도록 함

* 현재 상호저축은행의 영업구역은 11개이며, 추후 시행령 개정시 6개 권역 등으로 영업구역 광역화를 추진할 예정(06.12.22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'서민금융활성화 및 사금융 피해방지 대책' 추진 사항)

② 점포 이전시 금감위 사전 신고제로 전환(§5③, §10의2①4)

- 영업구역내 타 특별시, 광역시, 도로 점포를 이전하는 경우 자본금 증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후 금감위에 사전 신고하도록 함

- 영업구역 광역화 추진에 따른 특정지역 점포 집중 방지를 위함이며 동일 특별시, 광역시, 도 내에서 이전하는 경우는 현행과 같이 사후 보고하도록 함

③ 단축명칭 선택적 사용 허용(§9)

- 상호저축은행에 대해 '상호저축은행' 또는 '저축은행' 명칭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

※ 우리부 제로베이스 금융규제개혁 과제(05.11.21 발표) 추진 사항

④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금지행위 확대(§18의2)

- 직접·간접을 불문하고 저축은행 주식을 매입시키기 위한 신용공여 및 저축은행 주식을 담보로 하는 신용공여, 정당한 이유없이 대주주등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
- 상호저축은행의 불필요한 비용부담 및 대주주의 모델 헤저드 방지, 상호저축은행 건전경영 유도를 위해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금지행위를 확대

⑤ 경영관리공고시 지급정지대상에서 제외되는 채무의 범위 명확화(§24의4①)

- 국세수납, 정책자금취급대행 등 국가·공공단체 등의 대리업무와 관련하여 예치한 자금 등의 지급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채무의 지급정지대상에서 제외하여 관련 업무 활성화 유도

※ 우리부 제로베이스 금융규제개혁 과제(05.11.21 발표) 추진 사항

⑥ 임원의 자격요건 강화(§35의2)

- 정직, 업무집행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자 및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다면 해임·징계면직·정직·업무집행정지의 조치요구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·퇴직한 자의 임원 선임을 배제
- 징계 전에 퇴임 또는 퇴직하여 징계를 회피한 후 임원으로 선임되는 경우를 방지

⑦ 예금자우선변제권 조문 삭제(§37의2)

- 헌법재판소의 (구)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2(예금자등의 우선변제권)의 위헌 결정(06.11.30)*에 따라 효력을 상실한 동 규정을 삭제

* 위헌결정 주요 내용

상호신용금고의 예금채권자를 우대하기 위하여 상호신용금고 일반채권자를 불합리하게 희생시킴으로써 일반 채권자의 평등권 및 재산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

⑧ 상호저축은행 상근임원의 겸직제한(§37의4)

- 상호저축은행 상근임원에 대해서는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는 타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제한함으로써 상호저축은행의 건전경영을 유도

- 다만 상호저축은행이 주식을 15% 초과하는 보유하고 있는 영리법인, 상호저축은행을 자회사로 하는 금융지주 회사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

□ 이번 「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」은 9.18일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임

재정경제부 정책홍보관리실장